의안번호	5121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의 원	박란희 의원 외 10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21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8일
발 의 의 원 : 박란희,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노종용,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세종시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준공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 주차장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단지 내 자전거 주차장의 기본 설치기준을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2조제4항)

나.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은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주택의 유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붙임 3)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에 관한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2.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시설물 중 공동주택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 비율은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 실태에 관한 입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의결 및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2.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붙임 1]

관 계 법 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별표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3.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나.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